

#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관세법인 선을 관세사

## 1 들어가며

어느덧 FTA 발효 20년이 다가오고 있는 한국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개의 협정을 발효하였고,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 등 눈부신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업종별/협정별 /규모별로 FTA활용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의 FTA 활용률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필자 역시 10여년간 현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업종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식품의 원산지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도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분석을 통해 현재 완전생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및 실무와 제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조제식료품에 대한 한-아세안 완전생산기준 적용

관세율표 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제1류에서 제5류), 2부에는 식물성 생산품(제6류에서 제14류), 3부에는 지방과 기름(제15류), 4부에는 조제 식료품(제16류에서 제24류)가 분류된다.

1부에서 2부까지는 한-아세안 원산지결정 기준은 대부분 “수출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부와 2부의 경우 가공 단계가 낮은 농축수산 관련 제품이 분류되고 있고, 주로 1개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한 물품이 분류됨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주요 원재료에 대하여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4부 조제 식료품의 경우 다양한 원재료가 가공단계에 투입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상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역내산 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 중 일부 품목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① 주요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제한하였으며, 단서 조항의 물품이 역내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04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HS CODE : 제1901.10호



**품명 : 분유**  
 (구분: 품목분류2과-4657  
 (시행일자: 2020-05-29))



**구성요소**

Milk protein(탈염 유청) 41%, Skimmed Milk(equivalent powder) 16.54%, 옥수수전분 10%, 팜유 9.3%, 대두유 5.5%, 코코넛오일 5%, 유채유 4.5%,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s) 3.22%, 말토덱스트린 1.5%, Lactose 1.14609%, 대두레시틴, 복합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유청 제0404호, Skimmed Milk 제0402호, 옥수수전분 제11류에 해당하므로 옥수수전분은 역내산(한국산 또는 아세안산)을 사용하여야 함

② 소량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소량 사용된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소량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 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이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소량 사용된

원재료 때문에 완제품은 역내산 판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다른 예시로는 자몽종자추출물(제1302.19호)이 천연향균제로 화학물질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 증인데 한-아세안 FTA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소량의 자몽종자 추출물이 사용되어도 아세안산이 아니면 역내산 판정이 불가하다.

HS CODE : 제2103.90-9030호



품명 : 혼합조미료

**구성요소**

로즈마리분말 (0.4%), 마늘분말(4%), 마조람분말(0.4%), L-글루탐산나트륨(8.6%), 정제염(72%), 이산화규소(0.3%), 후추 (0.9%), 대두유(0.1%)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의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 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제7류에 분류되는 마늘분말, 제9류에 분류되는 후추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늘분말의 경우 국내산 마늘분말을 사용하면 되지만 후추의 경우 수입산으로 아세안 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역내산 충족이 불가하다.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확대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즉,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이 역내산인지 비역내산인지 확인해주는 서류로

법적 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고 그에 수반하는 책임도 발급한 자가 지게 되어 있다.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축수산업 관계자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자체가 생소하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등 현실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 관세청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도와주고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확인서 대신 인정해주고 있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산물	⑤ 물김 구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수협 <sup>1)</sup>
	⑥ 마른김 구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축산물 <sup>2)</sup>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⑫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식품류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sup>3)</sup>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도지사
지역 특산물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미취득한 농축수산업체가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작사실확인서, 축산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로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농축수산업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해주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한-아세안(52%)과 농림수산물(55.8%)<sup>4)</sup>의 FTA 활용률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높지 않은 편이다. 실무적으로 한-아세안 FTA 식품류의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업계의

문서작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관세청 FTA포털 FTA활용률 2021년(누적) 기준